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 요율인상 및 품목선정 타당한가

환 경처는 지난해 12월 8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4538호로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에는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하여 시행령 및 규칙안을 입법예고,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서 정한 폐기물 예치금 강화 및 폐기물처리 부담금제 계획이 지나치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20일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지난해 예치금 부과액은 290개업체에 291억원(납부 263억원)이었던 데 비해 환불액은 79개업체의 22억원으로, 환불률이 8.3%에 불과했다. 환불률이 저조한 것은 품목별 예치금 부과 금액이 매우 낮은 데다 환불대상이 제조·수입업자로 한정돼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재활용 참여 유도가 미흡했고, 일부 대상품목은 국내 기술적 경제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해 부과대상으로 부적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본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강화된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에 대한 관련 조항과 업계의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본다.

제2종 지정제품의 종류 및 제2종 지정사업자의 범위(제4조, 제10조 관련)

제2종지정 제품명 (제4조 관련)	제2종지정 사업자의 범위 (제10조 관련)
1. 금 속 캔	음·식료용 캔제품(주류용포함)을 제조하거나 제조된 캔제품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 및 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2. 합성수지용기	내부용량이 200cc 이상인 용기류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제품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 및 용기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 산출기준(제25조 관련)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 (자양강장 변질제에 한한다)	가. 종이팩 ○ 250ml이하 ○ 250ml초과	○ 개당 40전 ○ 개당 80전
	나. 금속캔 ○ 뚜껑부착형 ○ 뚜껑분리형	○ 개당 4원 ○ 개당 8원
	다. 유리병 ○ 350ml이하 ○ 350ml초과	○ 개당 4원 ○ 개당 6원
	라. 패트병 ○ 1500ml이하 ○ 1500ml초과	○ 개당 10원 ○ 개당 15원
2. 전지	가. 수은전지	○ 개당 100원
	나. 산화은전지	○ 개당 50원
	다. 자동차용 연축전지	○ 개당 1,500원
3. 타이어	가. 대형	○ 개당 1,000원
	나. 중·소형	○ 개당 300원
	다. 이륜차용	○ 개당 100원
4. 윤활유	○ 윤활유	○ l당 40원
5. 가전제품	가. 텔레비전	○ 대당 1,200원
	나. 세탁기	○ 대당 2,800원
	다. 냉장고	○ 대당 3,600원
	라. 에어컨디셔너	○ 대당 2,400원

비고 : 1. 제1호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4호 윤활유의 경우 출고량이 65%에 한하여 부과하며 육상내연기관용 윤활유와 기어유에 한한다.

자원재활용업종의 종류 및 재활용지정 사업자의 범위(제2조, 제8조 관련)

자원재활용업종명 (제2조 관련)	재활용지정 사업자의 범위 (제8조 관련)	재활용 대상품목
1. 제지업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폐유리
3. 제철 및 제강업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폐금속캔류
4. 합성수지제품제조업	연간 합성수지용기를 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폐합성수지

부담금 산출기준 (제25조 관련)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부탄가스제품 · 유독물제품	가. 살충제 유독물용기	
	○ 500ml이하	○ 개당 5원
	○ 500ml초과	○ 개당 11원
	나. 부탄가스용기	○ 개당 6원
2. 화장품	가. 유리병	
	○ 100ml이하	○ 개당 2원
	○ 100ml초과	○ 개당 3원
	나. 금속용기	
	○ 분사형 금속용기	○ 개당 6원
	○ 기타 금속용기	○ 개당 4원
3. 과자제품	○ 복합재료 용기류	○ 개당 30원
4. 용기라면	○ 합성수지 용기류	○ 개당 50전
5. 전지	○ 리튬전지, 니켈·카드 뮴전지, 망간전지, 알카 리망간전지(수은이 1ppm 이상 함유된 것 에 한한다.)	○ 개당 1.5원
6. 부동액	○ 부동액	○ l 당 40원
7. 형광등	○ 형광등	○ 개당 27원
8. 껌	○ 껌	○ 개당 40전
9. 담배	○ 필터담배	○ 개피당 1원
10.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기저귀	○ 개당 7원
11. 일회용품	○ 일회용 면도기	○ 개당 20전
	○ 일회용 칫솔	○ 개당 20전
	○ 나무젓가락	○ 개당 20전
	○ 종이컵	○ 개당 20전
	○ 일회용 금속 박접시	○ 개당 30전
12. 합성수지		○ 판매가의 0.7%

비고 : 1.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3호 과자제품의 경우 용기에 사용되는 종이, 합성수지, 금속, 유리, 극재 등의 재료중 3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는 용기에 한한다.
 3. 제12호 합성수지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되는 합성수지의 경우 C.I.F 가격기준으로 한다.

